



의 안 번 호	제34호
회 의 연 월 일	2026. 3. 9. (제583회 회의)

심의
·
의결
사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 출 부 서	경 찰 청 (치안정보국)
제출연월일	2026. 2 23

치안정보상황과장,대화경찰계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칩

1. 개정이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경찰관서 직접 방문에 따른 국민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경찰청장이 “집회신고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을 규정함 (안 제2조의 2)
- 나.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집회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외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 가능하도록 추가하고, 반복·중복신고 및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함 (안 제2조의3)
- 다. 집회 시간·장소가 중복된 수 건의 집회가 접수된 경우, 접수시각의 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의4)
- 라. 주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접수증 및 보완통고서, 금지·제한통고서, 이의신청 접수증·재결서, 조건통보서, 그 밖에 안내가 필요한 사항을 전자우편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송달·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방문 없이도 각종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의 2)
- 마. 평화적 집회·시위 개최를 위한 주최자의 경찰협력 의무를 규정함 (안 제3조의3)
- 바. 관할 경찰서장에서 관할경찰서장으로 약칭 및 띄어쓰기를 통일함 (안 제3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별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집회신고시스템 구축·운영) 경찰청장은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보안요소 등을 결합시킨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이하 “집회신고시스템”이라 한다)를 구축·운영한다.

제2조의3(신고서 제출방법)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수정, 변경 및 철회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1. 관할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제출
2. 집회신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을 해야 하며,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아닌 사람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또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제2조의4(신고서의 접수 순서) ① 옥외집회 또는 시위 신고서의 접수 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접수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1. 제2조의3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접수된 때

2. 제2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집회신고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이 경우 접수일시가 같은 경우 접수번호 순서에 따른다

② 옥외집회 또는 시위 신고서의 접수 순서는 해당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 또는 변경되더라도 제1항에 따라 최초 접수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보완 통고서의 송달)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 통고서를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3조의2(전자적 송달 등)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옥외집회나 시위의 주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주최자가 집회신고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송달 또는 통지(이하 “전자적 송달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접수증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통고서
3.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통고서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접수증 및 재결서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건통보서
6. 그 밖에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관련하여 안내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적 송달등은 주최자가 집회신고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의3(중복 집회 또는 시위의 분할 개최 권유 등) 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5조(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금지 요청)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 요청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의 거주자나 관리자 또는 학교나 군사시설의 거주자나 관리자가 그 이유 등을 명확하게 밝혀 관할경찰관서장이나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공무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두로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 등을 명확하게 밝힌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금지·제한 통고서의 송달) 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 통고서를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 각 호의 방법에 준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11조(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고지 등)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제17조(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 해산의 요청 등) 법 제20조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회·시위의 경우와 주최자·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

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제2조의3제1항제2호, 제2조의3제2항, 제2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서 제출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집회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을 위한 준비행위 등) ① 집회신고시스템의 구축 및 그 밖에 집회신고시스템을 통해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접수하는 데 필요한 준비행위 및 시범운영은 이 영 시행 전부터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범운영 기간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 신고는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따라 접수된 신고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조의2(집회신고시스템 구축·운영)</u> 경찰청장은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보안요소 등을 결합시킨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이하 “집회신고시스템”이라 한다)를 구축·운영한다.
<u><신 설></u>	제2조의3(신고서 제출방법)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수정 또는 변경 및 철회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1. 관할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제출 2. 집회신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을 해야 하며,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아닌 사람이 제1항

<신 설>

제3조(보완 통고서의 송달) 법 제 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서장 또는

제2호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또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제2조의4(신고서의 접수 순서) ①

옥외집회 또는 시위 신고서의 접수 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접수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1. 제2조의3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접수된 때

2. 제2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집회신고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이 경우 접수일시가 같은 경우 접수번호 순서에 따른다

② 옥외집회 또는 시위 신고서의 접수 순서는 해당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 또는 변경되더라도 제1항에 따라 최초 접수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보완 통고서의 송달) 법 제 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 통고서를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신 설>

시·도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 통고서를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3조의2(전자적 송달 등)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옥외집회나 시위의 주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주최자가 집회신고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송달 또는 통지(이하 “전자적 송달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접수증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 통고서
3.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통고서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접수증 및 재결서

<신 설>

제5조(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금지 요청)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 요청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의 거주자나 관리자 또는 학교나 군사시설의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건
통보서

6. 그 밖에 옥외집회 또는 시위
와 관련하여 안내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적 송달등
은 주최자가 집회신고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의3(중복 집회 또는 시위의
분할 개최 권유 등) 관할경찰관 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5조(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금지 요청)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 요청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의 거주자나 관리자 또는 학교나 군사시설의

거주자나 관리자가 그 이유 등을 명확하게 밝혀 관할 경찰관서장이나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공무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두로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 등을 명확하게 밝힌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금지·제한 통고서의 송달) 관할 경찰관서장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 통고서를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 각 호의 방법에 준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11조(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거주자나 관리자가 그 이유 등을 명확하게 밝혀 관할경찰관서장이나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공무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두로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 등을 명확하게 밝힌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금지·제한 통고서의 송달) 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 통고서를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 각 호의 방법에 준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11조(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고지 등) ①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제17조(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 해산의 요청 등) 법 제20조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회·시위의 경우와 주최자·주

제12조(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고지 등)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제17조(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 해산의 요청 등) 법 제20조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회·시위의 경우와 주최자·주

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	
연 락 처	(02) 3150 - 2450